

#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34-9345 / 전송 (02) 720-1162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김석민 담당자 주시경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607

시행일자 1998. 11. 10. (년)

발음 받는 곳 참조

참조 기획관리실장

취 급		국무조정실장	국 무 총 리
보 존			
조정관	7/14봉	기획실장	기획관리실장
심의관	25		
과 장	M		
기 안	주시경		협 조

제목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 시달 (국무총리지시 제1998- 29호)

1. 정부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운영 및 각종 위탁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을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장관 책임하에 금년내에 관련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1)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회원가입 강제 폐지

- 법령상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특정 협회명을 기술한 것은 이를 삭제함.

### 2)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수행

- 국가 자격증 소지자 등의 개업시 협회등록 의무와 회비강제 납부는 폐지하여 소관부처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 필요시 소속기관, 시·도에 위임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기타 개업, 이전, 휴업 및 폐업신고도 등록기관에서 담당하되, 위임·위탁 가능

### 3) 징계권의 국가기관 회수

- 국가가 부여한 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업무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또는 대법원에서 징계권을 갖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대법원과 협의 결정함

### 4) 보수교육 등 각종 위탁사무의 개선

- 법정의무화된 보수교육은 폐지하며,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둠
  - 다만, 의사, 약사 등 국민건강관련 보수교육 및 유독물 관리자에 대한 보수 교육은 존치함
  - 자격취득자,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개업전에 실시하는 연수, 실무 수습, 신규교육은 존치함.
- 각종 의무적 경력관리제를 폐지하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관리 제도로 개선함.
- 기타 수출승인, 경영지도등 위탁사무도 폐지 또는 개선함
  - 자율규제를 위한 수출승인제는 폐지함 (단, 국가간 협약 또는 업체간 국제 협의에 따른 쿼터 등 물량규제 품목은 제외)
  - 시험대행(관리)은 법령에 위탁근거만 두고 위탁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폐지함
  - 각종 경영지도의 폐지 및 제품안전성 검사 위탁기관을 복수화함

### 5) 단체의 설립조건 개선

- 단체의 설립을 위한 동의확보비율, 총회 출석 비율 규정은 폐지하며, 발기인 기준도 폐지 또는 회원자격자의 1/10이상으로 완화 개선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지부설치의무 등을 폐지함

국무규제 05090 - 607

#### 6) 각종승인 · 보고사항 정비

- 사업자단체의 지도 · 감독을 위한 각종 승인 · 보고사항은 법인에 관해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함.
- 회장등 임원 선임 승인은 사후 보고사항으로 개선함
- 총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사업계획 · 실적 등의 보고의무는 필요시 보고 받을수 있도록 개선함
- ※ 다만, 기금관리, 재정지원 단체등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의 범위내 존치함.

#### 7) 행정사항

- 부처의 소속기관(청)에서 지도 · 감독하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차질없이 법령이 정비되도록 소관부처에서 조치함
-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위탁사무(보수교육 등), 승인 · 보고사항도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의 제반 기준에 맞춰 정비함

붙임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가(31~47)

# 국무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 전화 (02) 734-9345 / 전송 (02) 720-1162  
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김석민 담당자 주시경

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607

시행일자 1998. 11. 10.(년)

발음 재창경제부장관

참조 기획관리실장

선 결			지 시	
접	일자 시간	. . : .	결 재	
수	번호		·	
	처리과		공 람	
	담당자			

제목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 시달 (국무총리지시 제1998 - 29호)

1. 정부는 사업자단체의 설립·운영 및 각종 위탁사무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을 시달하니 각 부처에서는 장관 책임하에 금년내에 관련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 -

### 1)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회원가입 강제 폐지

- 법령상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며, 특정 협회명을 기술한 것은 이를 삭제함.

### 2)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수행

- 국가 자격증 소지자 등의 개업시 협회등록 의무와 회비강제 납부는 폐지하여 소관부처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며,

- 필요시 소속기관, 시·도에 위임하거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개업, 이전, 휴업 및 폐업신고도 등록기관에서 담당하되, 위임·위탁 가능

// 계 속 //

### 3) 정계권의 국가기관 회수

- 국가가 부여한 자격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정계업무는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또는 대법원에서 징계권을 갖도록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에서 대법원과 협의 결정함

### 4) 보수교육 등 각종 위탁사무의 개선

- 법정의무화된 보수교육은 폐지하며, 관련규정 개정 등 필요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둘
  - 다만, 의사, 약사 등 국민건강관련 보수교육 및 유독물 관리자에 대한 보수 교육은 존치함
  - 자격취득자,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개업전에 실시하는 연수, 실무 수습, 신규교육은 존치함.
- 각종 의무적 경력관리제를 폐지하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관리 제도로 개선함.
- 기타 수출승인, 경영지도등 위탁사무도 폐지 또는 개선함
  - 자율규제를 위한 수출승인제는 폐지함 (단, 국가간 협약 또는 업체간 국제 협의에 따른 쿼터 등 물량규제 품목은 제외)
  - 시험대행(관리)은 법령에 위탁근거만 두고 위탁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폐지함
  - 각종 경영지도의 폐지 및 제품안전성 검사 위탁기관을 복수화함

### 5) 단체의 설립조건 개선

- 단체의 설립을 위한 동의확보비율, 총회 출석 비율 규정은 폐지하며, 발기인 기준도 폐지 또는 회원자격자의 1/10이상으로 완화 개선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지부설치의무 등을 폐지함

6) 각종승인 · 보고사항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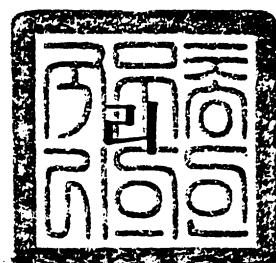
- 사업자단체의 지도 · 감독을 위한 각종 승인 · 보고사항은 법인에 관해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하여 규정함.
- 회장 등 임원 선임 승인은 사후 보고사항으로 개선함
- 총회 · 이사회의 의결사항, 사업계획 · 실적 등의 보고의무는 필요시 보고 받을수 있도록 개선함
- ※ 다만, 기금관리, 재정지원 단체등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의 범위내 존치함.

7) 행정사항

- 부처의 소속기관(청)에서 지도 · 감독하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차질없이 법령이 정비되도록 소관부처에서 조치함
-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위탁사무(보수교육 등), 승인 · 보고사항도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의 제반 기준에 맞춰 정비함

붙임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 1부. 끝.

국      무      총



받는 곳 가(31~47)

**國務總理指示  
第1998-2號**

**事業者團體 規制改革推進**

**'98. 11.**

**國務調整室**

## = 目 次 =

I. 現況 및 問題點 .....	1
II. 部處別 自體整備計劃案 .....	5
III. 事業者團體 規制改革推進 .....	12
1. 설립 및 가입 강제의 폐지 .....	12
2. 등록업무의 국가기관 회수 .....	14
3. 징계권의 국가기관 회수 .....	15
4. 보수교육의 폐지 .....	16
5. 기타 위탁사무 개혁방안 .....	18
6. 설립조건 개선방안 .....	19
7. 각종 승인 · 보고사항의 정비 .....	21
IV. 行政事項 .....	22
<添附> 事業者團體 現況 .....	23

## I. 現況 및 問題點

### 1. 事業者團體 現況

정부산하 유관단체 중 정부의 출연 또는 예산지원은 없으나 法令에 設立基盤을 두고 政府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수는 155개이며, 부처별 단체수는 아래와 같음

#### — 소관부처별 현황(155개 단체) —

보건복지부	43	산업자원부	40	건설교통부	32
문화관광부	15	농 림 부	3	정보통신부	6
노 동 부	1	재정경제부	3	해양수산부	2
행정자치부	3	환경부	3	법 무 부	2
과학기술부	2				

#### 〈근거법 형태에 따른 분류〉

근거법 형태	단체수	예
개별자격사법	27	변호사협회, 범무사회, 의사협회,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변리사회, 건축사회 등
개별산업관련법	42	전력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기술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다수산업관련법 (공업발전법 등)	86	철강협회, 의류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공업협회 등
합 계	155	

## 2. 規制 現況

政府는 行政의 효율화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유도, 집행사무를 委託하고, 사업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갖가지 규제를 가해 왔음.

### ◦ 위탁사무의 과다 및 독점 위탁

- 보수교육, 검사 등 경쟁도입이 가능한 위탁사무를 한 단체에 독점위탁하여 서비스질의 악화 초래
- 등록심사·징계권을 협회에 위탁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가입을 강제하는 부작용 유발

### ◦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강제

설립, 가입 및 회비납부 등을 법규로 강제하여 경쟁적인 단체의 설립을 원천 봉쇄

### ◦ 단체 설립에 까다로운 조건 부과

단체설립에 대하여 ① 일정수 이상(예: 1/3) 동종업자의 동의 확보, ② 유사명칭 사용금지, ③ 5개이상의 시·도에 자부를 설치 등의 조건을 부과

### ◦ 임원선임, 사업 등 단체운영에 대한 통제

인원의 구성방법과 임원수, 선출된 임원에 대한 정부승인, 위탁사무의 경증 및 내용과 무관한 보고의무 부과 등으로 단체의 운영을 통제

### 3. 問題點

#### 가. 대국민 서비스의 악화

-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적 지위 제공과 정부업무위탁으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카르텔, 가격담합 등 불공정 경쟁 유발
- 설립 및 가입강제는 경쟁적 단체의 출현을 어렵게 함으로써 단체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율적 정화 및 서비스개혁 요구의 확산 및 조직화 차단
- 정부위탁사무를 한 단체에 독점위탁하여 서비스질의 저하와 가격인상을 초래
- 결과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악화를 초래.

※ 예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표준위임계약서 양식은 ① 착수금 반환  
② 성공보수 지급 ③ 계약해제 ④ 분쟁발생시 조정신청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회규집)

#### 나. 정책집행의 공정성 훼손

- 사업자단체는 동종업자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익단체」로서, 일상 정책과정과 행정개혁 과정 등에서 자기집단의 이해를 추구해 왔음.
- 사업자단체에 위탁한 정부업무 역시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가 곤란함.

#### 다.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표출 억제

- 이익단체도 자유로운 경쟁상태에 있어야만 효율적인 이익 표출이 가능함에도, 단일협회의 설립을 강제하거나 설립조건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표출을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소수 및 개혁적인 건전세력의 목소리가 무시되기 쉬우며, 이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됨.

#### 라. 과중한 회비부담과 방만한 예산 운영 등

- 사업자단체에 대한 회원의 선택권을 불허함으로써 과중한 회비 부과
- 협회의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부동산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 확대, 급여 및 제수당의 불합리한 지급, 회장, 임원의 기밀비·판공비 과다 책정 등의 문제를 야기

## II. 部處別 自體整備計劃案

### 1. 設立 · 加入強制

- 14개 단체에 대한 설립 · 가입강제 폐지
- ※ 행정사법 및 공중위생법 폐지로 행정사회, 숙박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이용사회중앙회, 미용사회중앙회, 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위생관리용역협회 등 7개 단체는 임의단체화
- 반면,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세무사회, 의사협회 등 23개 단체는 전문성, 공익성 등을 이유로 설립 · 가입강제를 존치

〈설립 · 가입강제 부처개선안〉

구분	부처 및 협회명
폐지 (14)	노동부: 공인노무사회, 행정자치부: 행정사회, 용역경비협회 문화관광부: 케이블TV방송협회 건설교통부: 골재협회, 부동산중개업협회, 감정평가업협회 건축사협회, 건설기계협회(가입폐지), 건설기계정비협회(가입폐지) 산업자원부: 열관리시공협회,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과학기술부: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입폐지)
존치 (23)	법무부: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재정경제부: 세무사회, 관세사회, 공인회계사회(가입존치) 산업자원부: 변리사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안마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의무기록사협회, 안경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농림부: 수의사회

## 2. 登錄 및懲戒

### (1) 등록

- 변리사의 등록기관을 변리사회에서 특허청으로 개선
- 변호사, 세무사 등 그 밖의 전문자격인 등록업무는 현행대로 협회에 존치

〈등록사무 개선현황〉

구 분	협 회 명
개선(1)	변리사회 (협회에서 부처등록으로 개선)
존치(4)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 (2) 징계

-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권(제명 등 중징계 포함)  
: 현행대로 존치
-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 징계건의권 또는 견책 등  
경징계권 존치

## 3. 委託事務

### (1) 보수교육

- 행정사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던 19종의 보수 교육은 폐지
- 의료인, 의료기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과 건설기계조종사 등 국가기술자격자에 대한 53종의 보수교육은 전문성·자질 향상, 식품안전화보, 안전예방 등을 위해 존치

구분	교육기관 교육대상
폐지 (19)	행정사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목욕업중앙회 등 공중위생관련협회 7개, 부동산중개업협회, 자동차매매사업연합회, 골프연습장협회, 당구협회, 볼링경영자협회, 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안전위생교육), 노무사회, 수영장경영자협회(안전위생교육), 전기공사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존치 (53)	산업자원부: 열관리시공기술자 보수교육등 3종 교육 건설교통부: 건설기계조종사 보수교육 등 17종 교육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업종사자, 경비지도사 교육 환경부: 저수조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교육 재정경제부: 세무사, 관세사 보수교육 농림부: 수의사 보수교육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책임자, 스키장 지도교육 요원 교육, 골프장 코스관리요원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의사, 약사등 의료인(7개 업종),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8개 업종), 휴게실업중앙회 등 7개 식품위생관련 협회의 회원 위생교육, 식품위생 관리인

## (2) 기타 위탁사무의 개선

### 가. 할당관세, 양허관세추천 존치

양허관세추천 : 한국제지협회

할당관세추천 : 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철강협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비철금속협회, 양회공업협회, 비료공업협회,  
제당협회, 방직협회

나. 실적확인(신고) 및 시공능력 산정

폐지(1)	한국전기공사협회
개선(5) (위탁기관 복수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다. 수출입 승인

폐지(12) (수입승인, 수입요건확인)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건설기계협회 기계진흥회, 공작기계협회, 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봉제기계협회, 광학기기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의류산업협회
존치(1) (수입승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회
존치(11) (수출추천, 수출승인, 자율수출승인)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기계진흥회,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피혁제품 강관협회, 타이어공업협회, 신발산업협회

라. 시험대행, 시험관리

개 선(1)	한국감정평가협회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개선)
존 치(2)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관광협회

마. 증서발급, 관리

존치(4)	한국영상음반협회(음반, 비디오물 수입제조권리확인서) 한국골프장사업협회(회원증) 한국스키장협회(회원증) 한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전자격증관리)
-------	---

바. 검사, 평가, 심사 지도, 확인업무

폐지(2)	기계공업진흥회(국내기자재 반출확인) 한국엘피가스협회(증지제조판매)
개선(2)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부대업무, 감정평가사 지도, 위탁기관 복수화)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001년 한시적)
존치(11)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냉동기기검사) 한국기계공업진흥회(융자대상품목, 국산대체불가 확인) 섬유기계협회 (융자대상품목확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융자, 국산대체불가확인) 한국전기공업진흥회(융자확인)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국산대체불가확인) 한국광고사업협회(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대한측량협회 (지도 등의 심사, 공공측량심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연합회(경영지도)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경영지도)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경영지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연합회(경영지도)

#### 4. 設立條件

- 산자부와 건교부의 25개 단체는 설립조건을 폐지.  
폐지단체: 섬유직물수출조합, 생활용품수출조합,  
피혁제품수출조합, 건설감리협회, 주택협회 등
-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의 23개 단체의 설립기준에 대해서는 개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존치.

##### 〈설립조건 존치 단체〉

단체명	규제내용	존치사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복합운송주선업협회	회원1/2이상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체난립 예방</li></ul>
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자동차매매 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시업조합연합회 항공진흥협회 부정기항공사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2이상 동의</li><li>• 1/5-1/3발기</li><li>• 과반수출석 총회 의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표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선에서 완화</li><li>• 또는 완화내용 불확실 (다수 협회)</li></ul>
휴게실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유홍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조리사회중앙회 압착식용유업중앙회 식품임가공협회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인삼제품공업협회 음식업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회원유자격자 과반수 동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단체난립</li><li>•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단체 역할 약화</li></ul>

## 5. 團體 運營 · 活動 規制

- 75개 단체에 대한 200개 승인사항, 보고의무 폐지

구 분	폐 지	개 선	존 치
승인사항	121	16	225
보고사항	79	12	367
계	200	28	592

### 〈 승인사항 〉

- 폐지(121건) : 임원 선임, 공제사업, 보수, 수익사업 승인 등
- 개선 (16건) : 임원 선임 승인 → 보고
- 존치(225건) :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등

### 〈 보고사항 〉

- 폐지(79건) : 총회 · 이사회 결과, 비상근 임원선임, 지부설치 신고 등
- 개선(12건) : 사업계획, 예산보고등의 간소화
- 존치(367건) : 위탁사업 추진상황, 사업계획, 예산 · 결산 등

### III. 事業者團體 規制改革推進

#### 1. 設立 및 加入 強制의 疾止

##### (1) 검토사항

쟁점내용 : “변호사회, 의사회 등의 설립·가입 의무 존치 여부”

대상단체(23) :

- 설립·가입강제 : 변호사회, 법무사회, 변리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안마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의무기록사협회, 안경사협회, 수의사회, 한방병원협회(20)
- 설립임의·가입강제 :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3)

##### (2) 검토의견

- 변호사, 의사단체 등이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은 공감되나 이익단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공익적 기능의 수행을 위해 설립·가입을 강제할 필요는 없음.
- 전문자격사별로 1개의 단체만을 설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최신 기술·업계동향 등 정보의 제공, 정책 건의, 회원친목 등에 있어 회원과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경쟁력있는 단체의 설립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됨.
- 설립·가입강제를 풀 경우 개혁적인 신진 구성원들의 조직화가 용이해져 자율정화와 자발적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음.
- 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자격부여는 각국의 역사적 특수성 등에 따라 다르며, 지도·감독 등 효율성을 이유로 단체의 설립과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임.
  -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변호사협회의 설립이나 가입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음

### (3) 개혁방안

설립 및 가입강제규정을 임의규정방식으로 개정

#### ○ 규정방식

현 행	개혁안
· 설립 : …협회를 둔다 · 가입 : …회원이 된다	⇒ …협회를 둘 수 있다 …에 가입할 수 있다

※ 법령에 특정협회명을 기술한 것은 삭제

#### ○ 구체적인 내역

구 분	개혁방안	비 고
대한변호사협회	설립 · 가입강제 폐지	법정단체로서의 성격 유지
지방변호사회	설립 · 가입강제 폐지	임의단체화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수의사회	설립 · 가입강제 폐지	법정단체로서의 성격유지
의료인단체 의료기사단체	설립 · 가입강제 폐지	법정단체로서의 성격유지

- \* 의료인단체 :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협회, 조산협회 등
- \* 의료기사단체 : 임상병리협회, 방사선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의무기록사협회, 안경사협회 등

## 2. 登錄業務의 國家機關 回收

### (1) 검토사항

쟁점내용 : "변호사, 법무사 등의 개업전 협회등록의무 존치여부"

대상단체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2) 검토의견

- 전문자격사에게 배타적 개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며, 개업을 위해 사업자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맞지 않음.
- 협회가 등록권을 갖는 것과 위탁의 범위내에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며, 행정편의상 사업자단체에게 등록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 사업자단체에의 등록의무는 사실상 단체가입을 강제하는 결과 초래

### (3) 개혁방안

단체명	국가기관 회수	비 고
공인회계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	주무부처	
변호사회	법무부 또는 대법원	행정부, 사법부간 구체적 논의후 결정
법무사회	대법원	

- 등록업무의 자치단체, 소속기관 위임·위탁 가능
- 소속회원에 대한 등록업무의 사업자단체에 위탁
  - 특정사업자 단체 소속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사업자 단체에 등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개업·이전·휴업 및 폐업신고
  - 원칙적으로 등록기관에서 담당하되, 내부기관 위임·위탁 가능

### 3.懲戒權의 國家機關 回收

#### (1) 검토사항

내용：“변호사 징계권의 국가기관 회수”

대상단체：변호사회

#### (2) 검토의견

- 일본,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변호사의 징계권을 법원,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두고 있음
-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변호사 선발권을 변호사회가 갖는 경우에도 징계권은 법원에 있으며, 변호사회는 징계건의권만 가지고 있음.
- 국가가 부여한 자격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징계권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며 이를 협회에 부여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음
- 사업자단체가 전문직업가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해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윤리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경고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방함.

#### (3) 개혁방안

- 법무부 또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징계권을 갖도록 함
- 변협소속 징계위원회는 징계건의권과 자체기강권을 갖도록 함

변협소속 징계위원회	법무부 또는 대법원 징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견책, 경고 등 경징계</li><li>◦ 징계 건의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명, 정직, 과태료 등 중징계</li></ul>

\*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부, 사법부 협의에 따라 결정

## 4. 補修敎育의 疾止

### (1) 검토사항

쟁점내용 : “의사, 세무사 등의 보수교육 존치 여부”

대상단체 : 의사회 등이 실시하는 53종

### (2) 검토의견

- 국가기술자격자는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기술과 전문성을 개발.
  -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보수교육의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합의
- 교육의 형식화로 실효성이 낮고 단체의 가입 및 회비를 강제 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 (3) 개혁방안

- 모든 보수교육의 법정의무화를 폐지, 협회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함
  - 세무사, 관세사, 건설기술자, 운수사업 경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46종의 보수교육 폐지
  - 다만, 의사·약사 등 국민건강 관련 보수교육 및 유독물 관리자 교육은 존치
- ※ 자격취득자, 신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 또는 개업 이전에 실시하는 연수교육, 실무수습, 신규교육은 존치
-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고 교육방법을 다원화하되, 교육 기관을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개별업무위탁조치에 의해 실시

### 〈보수교육 폐지대상〉

교 육 기 관	교육대상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정비업자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
건설감리협회	감리원
건축사협회	건축사
대한측량협회	측량기술자

교육기관	교육대상
한국수도협회	저수조관리자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자동차대여사업조합	경영자 운수종사자 자동차검사원 정비책임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기술인력
측정기기교정협회	계량기사, 교정검사업무자
냉동공조공업협회	공조냉동기계기사
세무사회	세무사
관세사회	관세사
광고사업협회	옥외광고업종사자
용역경비협회	경비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수련시설운영책임자
골프장사업협회	코스관리요원
스키장사업협회	지도구조요원
안마사협회	안마사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의무기록사협회 안경사협회	의료기사
휴게실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조리사회중앙회 식품공업협회 음식업중앙회	회원

## 5. 其他 委託事務 改革方案

### (1) 자율규제를 위한 수출승인

#### 가. 검토사항

쟁점내용 : “자율수출승인 존치여부”

대상단체 : 섬유직물수출입조합, 생활용품수출조합, 피혁제품  
수출조합, 강관협회, 타이어공업협회, 신발산업협회

#### 나. 검토의견

- 업체간의 과당경쟁, 덤핑수출방지는 업계의 자율에 맡겨놓을  
사항이므로 이러한 목적의 수출승인제는 폐지

#### 다. 개선방안

- 자율규제를 위한 수출승인제 폐지  
단, 국가간 협약 또는 업체간의 국제협의에 따른 쿠터 등  
물량규제제품목은 제외

### (2) 시험대행, 시험관리

#### 가. 검토사항

쟁점내용 : “건축사, 관광종사원 시험관리의 협회위탁 방법”

대상 : 건축사협회, 관광협회

#### 나. 검토의견

- 법률에서 자격시험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독점위탁의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치 않음

#### 다. 개선방안

- 법률(시행령)에는 위탁근거만 두고, 위탁단체를 지정한 항목은  
폐지

### (3) 검사, 평가, 심사, 지도, 확인 추천

쟁점내용 : 경영지도의 폐지 및 검사 위탁기관 복수화

대상단체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6개 단체

#### 가. 경영지도 폐지

대상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연합회)

#### 나. 제품 안전성 검사 위탁기관 복수화

대상 : 냉동기기검사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한국광고사업협회)

## 6. 設立條件 改善方案

### (1) 쟁점사항

쟁점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등의 발기인비율, 동의 확보비율 등 설립조건”

대상단체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 등 23개 단체

### (2) 검토의견

- 이익집단도 경쟁 상태에 있어야만 공동이익도모, 이해표출, 회원서비스 등 단체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성을 이유로 설립·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3) 설립조건 개혁방안

- 동의확보비율과 총회출석비율은 폐지하고 발기인 기준은 이를 폐지하거나 회원자격자의 1/10 이상으로 개정
- 유사명칭사용금지, 지부설치의무 등 폐지

**<설립조건 개혁방안>**

단체명	규제내용	개혁방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복합운송주선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회원1/2이상 동의</li></ul>	
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시업조합연합회 항공진흥협회 부정기항공사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2이상 동의</li><li>1/5-1/3발기</li><li>과반수출석 총회 의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동의확보비율 폐지</li><li>총회출석비율 폐지</li><li>발기인비율 폐지 또는 회원자격자 1/10 이상으로 개정</li></ul>
휴게실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유통음식업중앙회 제과협회 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조리사회중앙회 암착식용유업중앙회 식품임가공협회 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인삼제품공업협회 음식업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회원유자격자 과반수 동의</li></ul>	

## 7. 各種 承認 · 報告事項의 整備

### (1) 검토사항

쟁점내용 : “사업자단체에 대한 각종 승인, 보고사항 존치여부”

대상단체 : 대부분 단체

### (2) 검토의견

- 위탁사무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만 남기되, 단체의 운영에 직접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임원선임 승인, 사업내용 보고 등은 폐지

### (3) 개혁방안

- 각종 승인 · 보고사항은 법인에 관해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최소화
- 회장 등 임원선임 승인은 사후 보고사항으로 개선
-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보고의무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 사업계획, 실적보고의무 역시 필요시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  
※ 단, 기금관리, 재정지원단체는 보고의무 존치

## IV. 行政事項

- 각 부처는 금년내에 사업자단체 규제개혁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조치함
  - 행정사법, 공중위생법 폐지
  - 변호사법, 의료법 등 58개 법률 개정
- ※ 부처의 소속기관(청)에서 지도·감독하는 사업자단체의 경우도 법령정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소관부처에서 조치함
- 기타 비영리법인에 대한 각종 위탁사무(보수교육 등), 승인·보고사항 등도 『사업자단체 규제개혁추진』의 제반 기준에 맞춰 정비함

【첨부】

〈사업자단체 현황〉

소관부처	단체명	단체수
재정경제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관세사회,	3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2
행정자치부	대한행정사회, 한국광고사업협회, 한국용역경비협회	3
과학기술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기술사회	2
문화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관광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영상음반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 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 한국비디오물감상실업협회,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한국골프장사업협회, 한국스키장사업협회, 한국골프연습장협회, 대한당구협회, 한국볼링경영자협회	15
농림부	한국농림수산식품수출입조합,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대한수의사회,	3

소관부처	단체명	단체수
산업자원부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 대한염업조합, 한국열관리시공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LP가스공업협회,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한국생활용품수출조합,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한국군납조합, 대한방직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신발산업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대한제당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한국봉제기계공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강관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섬유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 한국베어링공업협회, 한국외국기업협회, 대한변리사회	40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유선방송협회	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수도협회	3
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1

소관부처	단체명	단체수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골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한국한공진흥협회, 부정기항공사업협회, 대한측량협회	32

소관부처	단체명	단체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대한약업사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식품공업협회, 43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휴게실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통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한국식품임가공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인삼제품공업협회, 한국목욕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대한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물수건위생처리업중앙회, 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해양수산부	한국항만하역협회, 한국수산물수출입조합	2